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박희승 · 전진숙  
박해철 · 이연희 · 박 정  
임미애 · 윤후덕 · 허종식  
허성무 · 서왕진 · 김남희  
안태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,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.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.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,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, 제6조제1항 후단, 제12조의2제1항 후단,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).



##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오염폐기물(혈흔, 부패물 등이 묻어 위생적 처리가 필요한 가구, 의류 및 집기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오염폐기물의 종류, 운반 및 폐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6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”를 “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“고독사”를 “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고독사”를 “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고독사의 원인과”를 “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의 원인과”로, “5년마다 고독사”를 “3년마다 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 조사·발굴 결과를 연계하여야 하며, 연계 대상

정보의 범위·항목·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상담·교육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 처리 및 유품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(생략)

제10조(고독사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2조의2(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, 기관 간 정보 공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-----  
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 실태조사) ① -----  
-----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의 원인과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3년마다 사회적 고립·은둔 및 고독사-----  
-----  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유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② ~ ⑧ (생략)

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 조사·발굴 결과를 연계하여야 하며,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·항목·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. 이 경우 상담·교육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고독사 사후 수습 지

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 처리 및 유품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